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안전성평가 대상에 해체공사 포함 등 〉

■ 김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810호)

2026. 4.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안전성평가 대상에 해체공사 포함 등	2
※ 참고자료	
1. 안전성평가 업무 절차도	8
2. 안전성평가 결과 등록 현황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대식의원 등 14인
2. 발 의 일 : 2026. 2. 12.
3. 회 부 일 : 2026. 2.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 건축이나 학교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서의 건설공사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교육시설의 장이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최근 교육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해체공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해체공사는 안전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안전성 평가는 착공 전까지 실시하게 되어 있어 교육시설의 장이 인접 지역의 공사 진행에 대해 적시에 파악하지 못할 경우 안전성 보완 조치가 지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안전성평가 대상에 해체공사를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는 건설공사를 인·허가하는 경우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등).

Ⅲ. 검토의견

1. 안전성평가에 해체공사 포함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이하 “안전성평가”) 대상에 교육시설의 해체공사를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건설공사 인·허가권자가 인·허가 사실을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안전성평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성평가) ① ----- -----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축, <u>개축</u> 및 이전 등은 제외한다)하려는 자	1. ----- ----- <u>건축 및 해체</u> ----- ----- <u>개축, 해체</u> -----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신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인·허가하는 경우 감독기관의 장 또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보고 받은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부실한 안전성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실시한 타당성 검토 결과와 필요한 조치를 해당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생 략) 제54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 략)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5. (생 략) ④ (생 략)	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3항에----- ----- ----- ----- ----- -----. ⑤ ----- ---제4항에----- ----- ----- -. -----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54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19조제3항을----- ----- ----- 4.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안전성평가는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해 교육 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임. 안전성평가는 ①(교내)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 건축, ②(교외) 학교경계 4미터 이내에서의 건설공사, ③(교외) 학교경계 4미터 초과 50미터 이하 범위에서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함¹⁾.

평가 내용은 공사장과 주변 지역에 설치하는 사고 예방 시설의 적정성, 해당 교육시설 통학로의 안전성 등으로 구성됨²⁾.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자는 평가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³⁾ 및 교육시설의 장(이하 “교육시설장 등”)에게 14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낙하물방지망 또는 울타리 설치, 건축계획서의 수정·보완

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안전성평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축, 개축 및 이전 등은 제외한다)하려는 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3.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안전성평가)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를 말한다.

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안전성평가) ③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해당 교육시설의 구조 및 인접 대지 지반의 안전성
2. 공사장과 그 주변 지역에 설치하는 사고 예방 시설의 적정성
3. 해당 교육시설 통학로의 안전성

3) 유치원이나 초·중등학교는 교육청, 대학은 교육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4).

한편, 안전성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장 등은 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음5).

□ 그러나, 안전성평가 제도와 관련하여 일부 설계상의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는바, 현행법상 (교내)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성평가는 건축, 개축 및 이전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해체” 공사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 제도는 교육시설의 건축 또는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만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교육시설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6), 경우에 따라 교육시설장 등이 건설공사가 착공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뒤에야

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안전성평가) ②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자는 평가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성 보완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안전성평가) ⑤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는 해당 안전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⑥ 법 제19조제2항에서 “안전성 보완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낙하물방지망 또는 울타리 설치, 건축계획서의 수정·보완 등 해당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말한다.

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안전성평가) ③ 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분실한 안전성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실시한 타당성 검토 결과와 필요한 조치를 해당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안전성평가) ④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자는 해당 건축 또는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⑤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는 해당 안전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공사 진행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등 보완 조치 요구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① (교내)교육시설의 해체공사를 안전성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② 지방자치단체장 등 인·허가권자가 (교외)건설공사 인·허가 사실을 교육시설장 등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노후화로 증가하고 있는 교육시설 해체(철거) 공사에 대해서도 안전성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최근 3년간('23.1.~'26.2.) 유·초·중등학교 건물 철거 현황 >

(단위: 개)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합계	7	2,043	843	892	21	3,806
국립	-	2	1	3	2	8
서울	1	106	81	37	2	227
부산	-	136	78	37	4	255
대구	-	73	39	28	-	140
인천	-	76	26	38	-	140
광주	-	34	8	17	-	59
대전	1	44	20	31	-	96
울산	-	44	17	12	2	75
세종	-	1	-	3	-	4
경기	1	232	84	117	-	434
강원	-	159	64	102	4	329
충북	2	70	50	57	1	180
충남	1	101	59	44	-	205
전북	-	170	63	63	-	296
전남	-	243	96	74	1	414
경북	1	405	96	120	4	626
경남	-	114	54	90	1	259
제주	-	33	7	19	-	59

자료: 교육시설통합정보망

또한, 교육시설장 등은 인·허가 사실에 대한 통보를 통해 학교 인근에서 추진되는 건설공사의 계획과 일정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전성평가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공사 주체에 그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 시 보완조치 이행 등 추가 안전대책을 요청할 수 있음.

□ 즉, 개정안은 현행 안전성평가 제도의 사각지대와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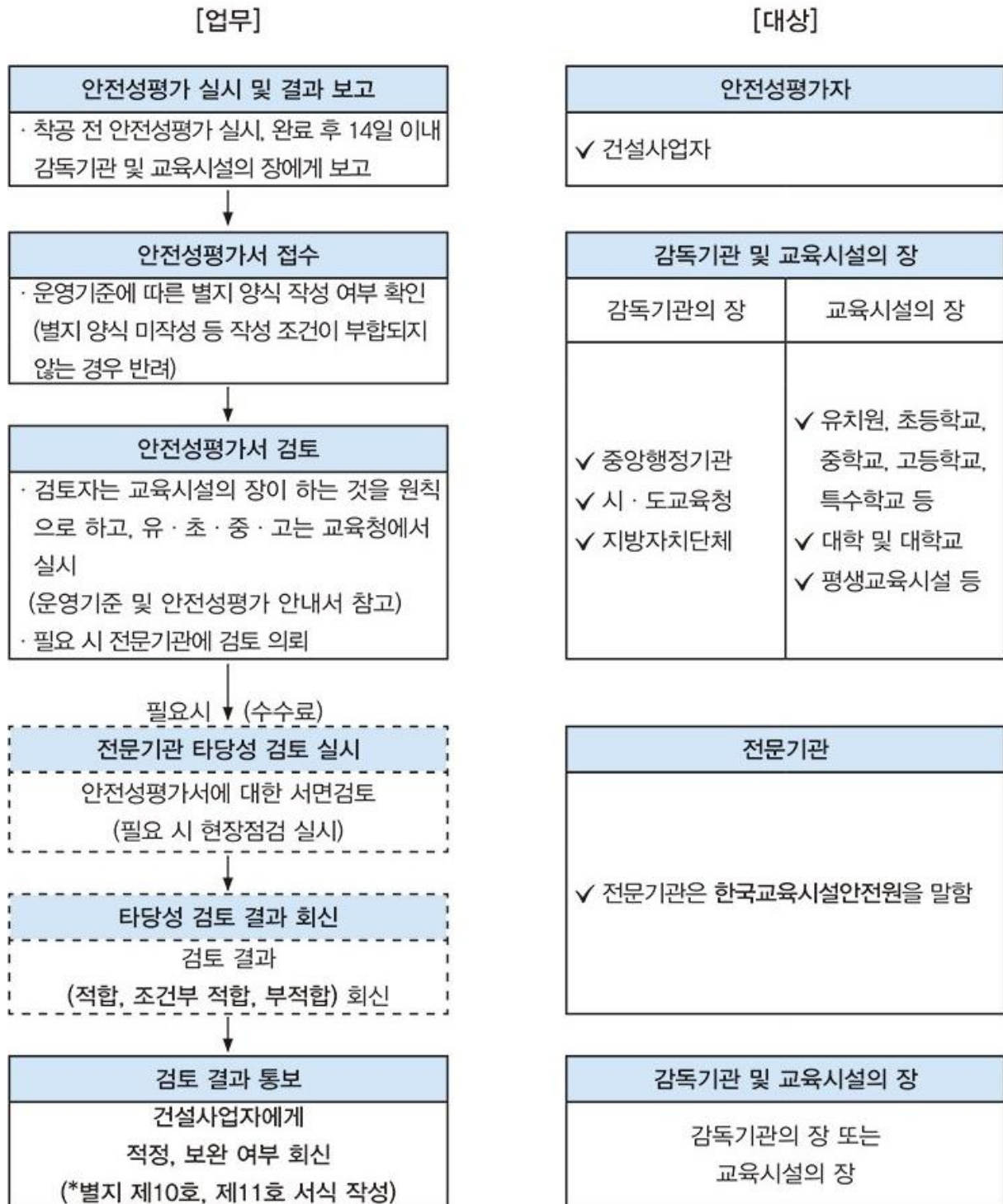
□ 교육부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행 안전성평가가 교육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교육시설의 노후화로 해체공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해체 시에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학생 등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교육시설 인접 지역에서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교육시설 자체적으로는 사전에 공사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통학로 등 안전 조치 지연 우려가 있다면서 건설공사 인·허가사실을 교육시설의 장 등이 즉시 통보받아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적기에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4

참 고 1

안전성평가 업무 절차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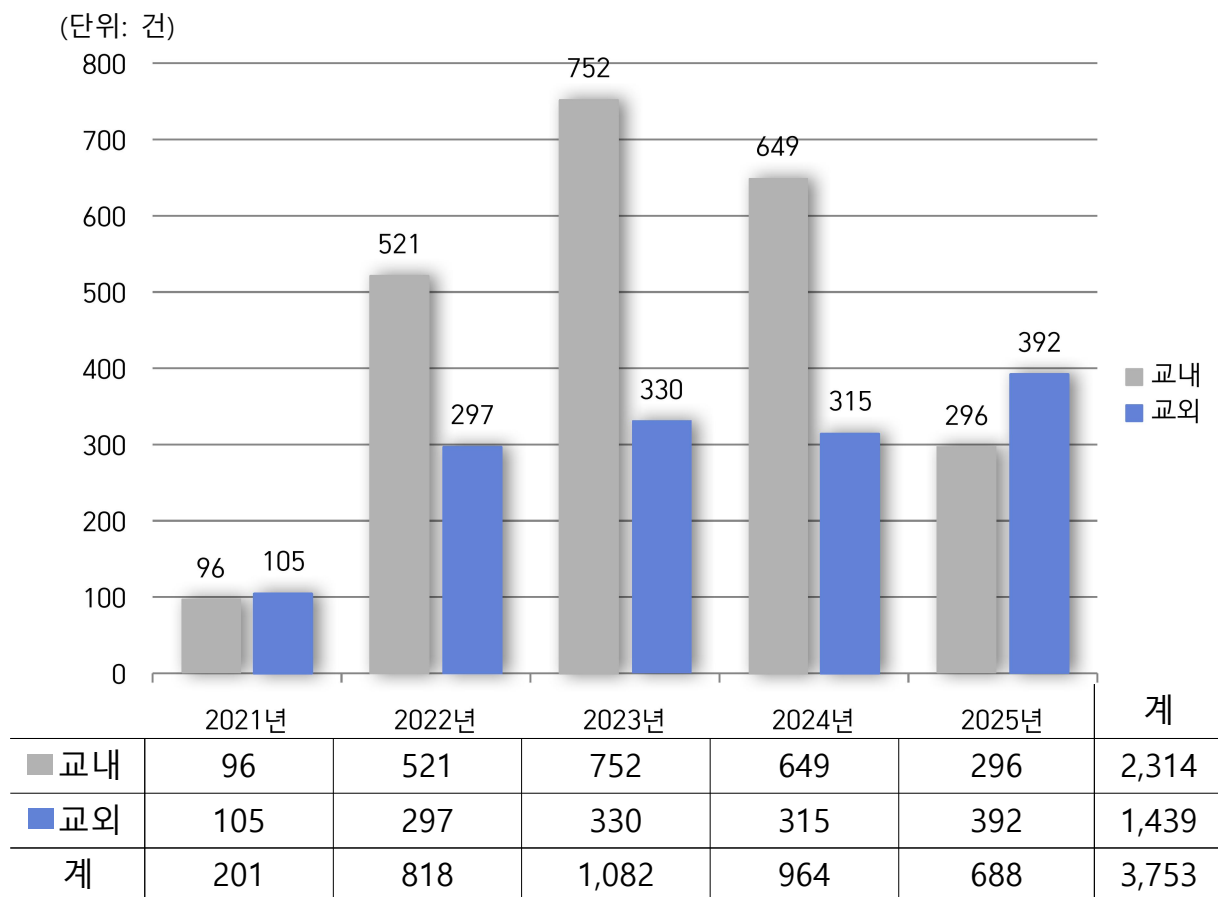


7) 자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누리집

참 고 2

안전성평가 결과 등록 현황⁸⁾

'26.2.27.기준



※ (교내) 교육시설 건축

(교외)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건설공사

8) 자료: 교육시설통합정보망